2015년 3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월 12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• 장대교 과장(042-481-1601) • 김정호 사무관(042-481-1603)

중기청, 3개도 8개 지역 『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』 지정

◁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, 자금, 판로 등 특례지원 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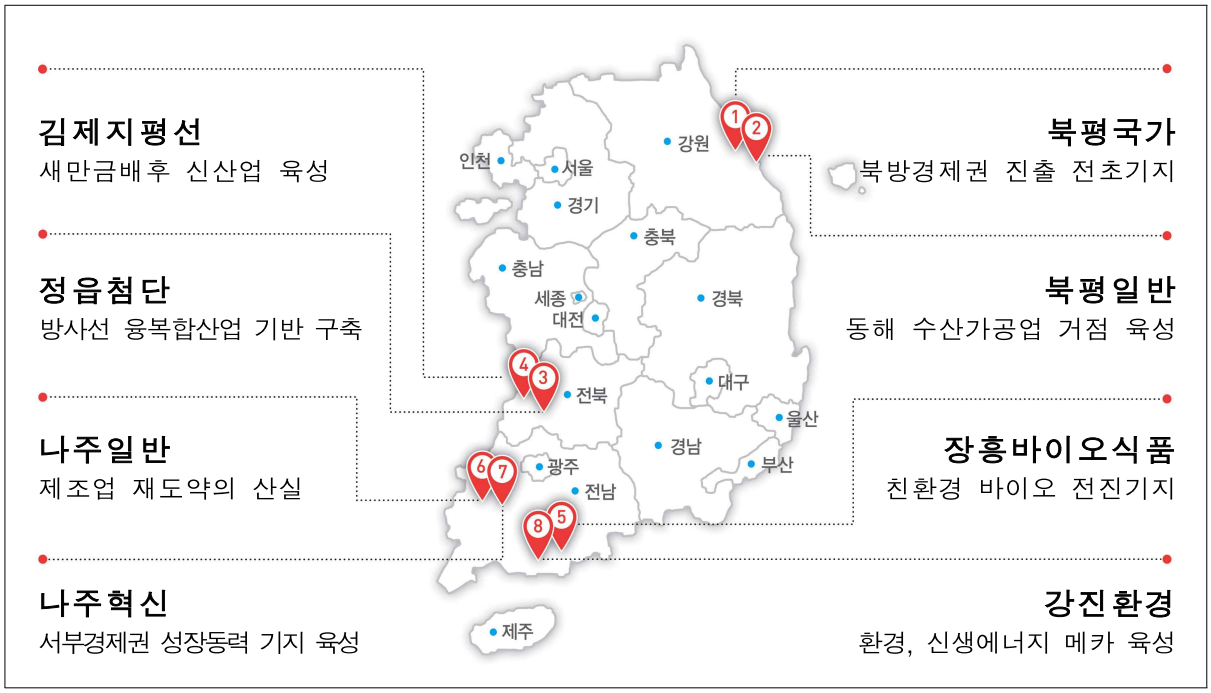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**8개 산업단지**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. 3.13일부터 5년간 『**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**』으로 지정 하였다고 밝혔다.

< 지정 현황 및 이유 >

❖ 전북 : **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,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**

❖ 전남 : **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,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, 나주 일반산업단지,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**

❖ 강원 : **북평 국가산업단지, 북평 일반산업단지**



※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이하이며,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

□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**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,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·도의 산업단지**를 대상으로 지정한다.

○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**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% 감면**되며,

○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**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**이 가능하고,

○ 기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**정책자금 융자한도, 신용보증, 산업기능요원, 공공구매, 기술개발(R&D) 자금**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.

○ 아울러, 지자체별로 조례 제·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**분양조건 완화, 자금 우대지원,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**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한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·도의 **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** 기대한다고 밝혔다.

<참고>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요 1부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김정호 사무관(☎ 042-481-16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요**

□ 지정 목적

○ **산업생산이 낙후한 시·도 소재 산업단지**에 대해 **세제, 자금, 판로 등을 특례 지원**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

□ 지정 대상

○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**"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"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·도 내의 산업단지**

*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: 산업부에서 수립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인구 20만 미만의 시·군 소재 산업단지

□ 지정 절차

○ 신청(시·도지사) → 심사(중기청장) → 기재부와 협의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) → **지정 고시**(중기청장)

□ 지원 내용

○ **(세제)**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64조)

○ **(판로)**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및 제25조)

○ **(융자)**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

-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한도(융자잔액 기준 : 비수도권 50억원, 매출액기준 : 150% 이내) 예외 적용 →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

*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

○ **(보증)** 기보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우대* 및 신보의 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 보증우대**

* 기보 보증우대

-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 2억원으로 확대(일반기업 1억원)

** 신보 보증우대 : 보증한도 우대(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, 저신용기업 보증한도 차감배제 등) 및 보증료율 차감(0.1%p)

○ **(산업기능요원)**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

* 郡 소재(15점), 지방소재(10점), 광역시소재(5점), 수도권소재(2점) / 특별지원지역 추가 1점

○ **(공공구매)**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

*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0.5점 가점 부여

○ **(단독 및 공동기술개발)** 단독 개발 가능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공동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 (1점 가점)

○ **(컨설팅 및 애로해결)**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선 지원